

지방자치 Focus  
2014. 9



# 지방자치단체의 결혼이민자정책 개선방안 - 사례지역을 중심으로 -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LOCAL  
ADMINISTRATION

## [목 차]

- I. 결혼이민자의 의의 및 특성
- II. 지방자치단체의 결혼이민자 지원정책 현황과 문제점
- III. 결혼이민자의 지방자치단체 지원정책 만족도
- IV. 지방자치단체의 결혼이민자 지원정책 개선방안

**지방자치 FOCUS** 제83호(2014. 9)

**내용문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조석주  
02-3488-7316 csj@krila.re.kr

**배포문의** 발간 담당자(02-3488-7300)

본 내용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www.krila.re.kr](http://www.krila.re.kr)



# 지방자치단체의 결혼이민자정책 개선방안 – 사례지역을 중심으로 –

조석주(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 I. 결혼이민자의 의의 및 특성

- 결혼이민자는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을 말함
- 결혼이민자는 결혼이주자, 결혼이주여성, 이주여성 등 다양하게 불리고 있으며 외국인과는 달리 결혼을 통해 우리나라에 영구히 귀화하여 대한민국 국민이 되기 위해 온 외국주민을 말함
- 특히 여성결혼이민자는 한국 남성과 결혼하여 대한민국 영토에 거주하는 외국인 여성을 말함
  - 이들은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거나 그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정 등이 있으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음
- 여성결혼이민자는 비록 한국 남성과 결혼하였다 하여 즉시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며, 결혼 2년 미만의 국적미취득 결혼이민자와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자로 구분됨
- 그러나 아직 일정기간이 경과되지 않아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결혼이민자나 결혼 후 2년이 경과한 후 한국 국적을 취득하여 한국인이 된 결혼이민자 모두 한국사회의 다문화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임
- 이들은 한국인과의 결혼을 통하여 한국에서의 정착과 영주할 것을 전제로 하는 외국인 주민으로서 자신들이 겪는 사회·경제적 문제점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녀들이 겪게 되는 문제에도 관심을 갖고 있음
- 특히 이들 다문화가정이 겪는 문화적 갈등과 사회적응과정은 한국의 다문화사회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사례를 제공하기에 충분함
- 음성군은 수도권에 인접한 지역으로, 전체 인구는 물론 결혼이민자, 외국인근로자 등 외국인 국민도 계속 증가하고 있음. 또한 군에서도 결혼이민자에 대한 정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어 관련 연구를 수행하기에 매우 적합하여 사례지역으로 선정하였음

## Ⅱ. 지방자치단체의 결혼이민자 지원정책 현황과 문제점 : 사례지역을 중심으로

### 1. 지원정책 현황

#### 1) 조직

- 음성군의 결혼이민자 지원사업은 주민복지실의 여성청소년팀에서 팀장 아래에 담당주무관 1명이 다문화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주요 업무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 다문화업무 일반, 외국인 지원 및 관리, 결혼 중개업 등록 및 관리 등임

#### 2) 예산

- 2014년 음성군의 결혼이민자 지원사업을 보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 지원, 다문화가족자녀 언어영재교실,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다문화가족 국제특송요금 지원사업 등이며 이와 관련하여 투입된 예산내역은 <표 1>과 같음

**<표 1> 음성군 다문화가족지원사업 및 예산내역(2014)**

사업명	예산(천 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213,087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	23,270
다문화가족자녀 언어영재교실	12,831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13,506
다문화가족 국제특송요금 지원사업	1,070
계	263,764

자료 : <http://www.es21.go.kr>

# 지방자치단체의 결혼이민자정책 개선방안 - 사례지역을 중심으로 -

## 3) 주요 사업

### (1) 결혼이민자 지원사업

- 결혼이민자를 위한 주요 사업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 사업, 다문화가족자녀 이중언어지원사업,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지원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이외에 결혼중개업체 지도·점검사업 등이 있음
  - 음성군 역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센터운영을 위한 필수사업인 기본사업과 홍보 등 운영사업이 있고, 선택사업으로 특성화사업이 있음

〈표 2〉 음성다문화가족지원센터 주요 사업 및 프로그램(2014)

구분	주요 내용
교육 사업	한국어 교육, 가족통합 교육, 취업·창업 연계 교육, 방문사업 교육
상담 사업	개인·가족상담
문화 사업	나눔봉사단, 자조모임, 육아정보 나눔터
홍보 사업	다문화인식개선 및 지역사회 홍보, 지역네트워크 강화
특성화 사업	통·번역서비스 사업, 언어영재교실, 언어발달 지원 사업
프로그램	한국어 교실, 홈패션 교실, 바리스타 교실, 세계요리 교실, 천연비누 교실, 컴퓨터 교육, 운전 교육, 언어발달교실, 나라별 공동체

자료 : <http://www.gte.or.kr>

## 2. 문제점

### 1) 지역특성에 따른 지원정책의 부족임

- 결혼이민자의 경우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에 분산되어 거주하고 있음
  - 그러나 대부분의 사업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중심의 위탁사업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고 결혼이민자 담당 부서의 독자적인 사업은 거의 추진되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임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주요사업은 기본 사업과 기타사업으로 구분되며 전자는 한국어 교육, 다문화사회 이해교육, 가족교육 등이며 후자는 통역서비스 자조모임, 자원봉사단 운영, 홍보 사업 등 센터의 필요에 의해 운영되는 사업 등임
  - 대부분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사업은 중앙의 여성가족부에서 작성한 기본 프로그램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지역의 특성, 결혼이민자의 거주기간, 사례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및 서비스제공 프로그램은 충분하지 못한 경우가 있음
- 사례 지역인 음성군에서 추진되고 있는 결혼이민자 지원정책 역시 여성가족부의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지침에 의한 언어교육, 가족통합교육 사업, 취업지원교육, 방문교육 사업 등 유사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음
  - 그 외의 사업으로서 자치단체에서 직접 추진하는 사업은 상대적으로 적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는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유사한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음<sup>1)</sup>

## 2) 정착시기에 무관한 획일적인 교육프로그램 운영임

- 한국에 온 입국한 시점이 각기 다름
  - 입국한 지 1년 미만의 사람이 있고 10여 년 된 사람도 있으며, 따라서 입국시기에 따라 이들이 필요한 지원사업 및 행정서비스가 다를 수밖에 없음
- 우리 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결혼이민자 지원정책 및 시민사회단체의 지원프로그램은 한글교육 중심의 입국초기 프로그램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착안정시기인 4~5년 후의 교육훈련 프로그램, 행정서비스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경우가 많음
  - 결혼이민자의 경우 입국초기에는 한글교육 및 한국어해 프로그램이 중요하지만 4~5년 후에는 자녀교육문제, 취업문제가 중요하며, 따라서 결혼이민자의 정착시기에 따른 맞춤형 지원정책과 교육프로그램 제공이 필요함

1)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없는 자치단체는 시민사회단체나 종교단체가 이를 대신하고 있으며 자치단체에서 별도로 민간 단체에게 민간위탁시켜 결혼이민자를 돕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결혼이민자정책 개선방안 - 사례지역을 중심으로 -

### 3) 민간위탁 또는 지도감독 중심의 결혼이민자 지원정책임

- 음성군을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 지원정책은 독자적인 고유업무의 수행보다는 지역 내 NGO 또는 종교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위탁하여 이주민을 지원하고 있음
  - 음성군의 경우도 결혼이민자에 대한 정책은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에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정책은 교회에서 '이주민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운영되고 있으며<sup>2)</sup>, 이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직접 결혼이민자정책을 추진하기에는 인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임

### 4) 비전문기관에 민간위탁하는 경향이 있음

-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동 예산지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음
  - 대체적으로 결혼이민자 관련 사회단체나 종교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역에서 꾸준히 전문성을 쌓아온 단체 대신 결혼이민자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지역사회에 정치적 영향력이 큰 시민사회단체, 퇴직공무원이 대표로 있는 기관에 민간위탁함으로써 제대로 된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음

### 5) 결혼이민자에 대한 온정주의 정책임

- 한국에 입국한 결혼이민자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정책이 한국에 뿌리를 내리고 정착할 수 있는 지원정책보다는 단기간접, 일회성 지원정책에 그치는 경향이 있어 결혼이민자 스스로의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정책이 부족함
- 또한 책임과 권한이 부여된 정책보다는 일방적인 퍼주기식 정책을 펼치다 보니 결혼이민자 스스로 정착을 위한 자립정신이 약해지고 지나치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정책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음

2) 경기도 군포시의 경우, 지역 내 다문화 관련 민간 NGO인 '아시아의 창'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이 단체를 통해 결혼이민자를 지원·운영하고 있음

## 6) 결혼이민자에 대한 지원행사가 중복적·경쟁적으로 실시되는 경향이 있음

- 결혼이민자 지원행사가 중복적·경쟁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경향이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여러 기관에서 결혼이민자 관련 행사를 개최하여 기관의 이미지를 제고시키려는 경향이 있으며, 그러다 보니 경쟁적으로 비슷한 형태의 결혼이민자 지원행사가 열리게 되고 이로 인해 행사의 효과가 반감되고 예산의 낭비가 발생함
- 결혼이민자 역시 여러 행사에 자주 참석하다 보니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의 수업에 자주 빠지게 되어 집중력에 문제가 생겨 교육능률이 저하되고 기관의 교과진도에 차질이 발생함
- 또한 결혼이민자들은 행사를 주최하는 기관에서 주는 선물에 관심을 갖게 되고 선물이 없거나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참석하지 않는 경향이 있음
- 이와 같은 각종 행사는 일회성 행사로 그치는 경향이 있으며 결혼이민자의 입장에서 외국인을 위한 행사를 추진하기 보다는 행사주최 측의 생색내기 혹은 보여주는 전시성 행사가 많음

## 7)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접근성 부족임

- 지방자치단체에는 결혼이민자를 위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주로 운영되고 있음. 음성군의 경우도 다문화가족센터는 음성읍과 금왕읍에,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이주민종합지원센터는 감곡면에 위치하고 있음
- 이와 같이 결혼이민자를 위한 지원센터가 1개의 자치단체에 1~2개 존재하고 있고, 위치도 시청사 또는 군청사 소재지 등에 위치하고 있음
- 따라서 이곳에서 멀리 떨어진 면소재지에 살고 있는 결혼이민자들은 이동거리가 멀어 교통편, 시간상의 애로사항이 있어 각 센터에서 제공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이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가 없는 경향이 있음

### Ⅲ. 결혼이민자의 지방자치단체 지원정책 만족도<sup>3)</sup> : 음성군을 중심으로

#### 1. 지역사회 정착의 도움 정도

- 음성군이 결혼이민자에게 제공하는 정책이나 프로그램이 지역사회 정착에의 도움 정도를 묻는 질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하고 있음
  - ‘대체로 그렇다’에 응답한 수가 전체 응답자 81명의 45.68%에 해당하는 37명이 답하고 있음
  - 두 번째는 ‘매우 그렇다’에 응답하였으며 총 응답자의 22.22%인 18명이 답하고 있음
  - 반면 부정적인 답변인 ‘전혀 그렇지 않다’(0.0%), ‘별로 그렇지 않다’에 응답한 수는 9명 (11.11%)밖에 되지 않음.
- 음성군의 사례로 볼 때, 결혼이민자는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지역에서 제공하는 결혼이민자정책과 프로그램이 지역정착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표 3〉 지역사회 정착의 도움 정도

구분	결혼이민자	
	빈도(명)	비율(%)
전혀 그렇지 않다	0	0.00
별로 그렇지 않다	9	11.11
보통이다	17	20.99
대체로 그렇다	37	45.68
매우 그렇다	18	22.22
계	81	100.0

#### 2. 지역주민들과의 교류에 기여

- 현재 음성군에서 제공하고 있는 결혼이민자에 대한 정책과 프로그램이 지역주민들과의 교류에 어느 정도 도움을 주었느냐는 질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하고 있음

3) 음성군에 거주하고 있는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음성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결혼이민자정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음. 표본수는 81명임. 조사기간은 2012년 7월 25일부터 8월 10일까지임

- ‘보통이다’(35.8%)에 가장 많은 수가 응답하고 있고, 이어서 ‘대체로 그렇다’(32.1%), ‘매우 그렇다’(12.35%)라고 응답하고 있어 결혼이민자들은 대부분은 지역에서 제공하는 정책과 프로그램이 이웃 지역주민과의 교류기회에 일정 부문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반면 ‘별로 그렇지 않다’(19.75%)라고 답하고 있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결혼이민자도 있음을 알 수 있음
- 대체적으로 많은 결혼이민자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통해 지역주민과의 교류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음

〈표 4〉 지역주민들과의 교류 기여

구분	결혼이민자	
	빈도(명)	비율(%)
전혀 그렇지 않다	0	0.00
별로 그렇지 않다	16	19.75
보통이다	29	35.80
대체로 그렇다	26	32.10
매우 그렇다	10	12.35
계	81	100.0

### 3. 한국사회(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 정도

- 지역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책과 프로그램이 한국사회 또는 한국 문화의 이해에 도움을 주느냐는 질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하고 있음
- ‘대체로 그렇다’(46.91%), ‘매우 그렇다’(21.0%)에 응답하고 있어 대부분의 결혼이민자가 지역에서 시행하는 정책과 프로그램이 한국사회 이해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음
  - 이외에 ‘보통이다’(27.16%), ‘별로 그렇지 않다’(4.94%)에 답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결혼이민자정책 개선방안 - 사례지역을 중심으로 -

- 음성군의 사례를 통해 볼 때, 결혼이민자들이 지방자치단체의 결혼이민자정책이 그들이 한국사회를 이해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표 5〉 한국사회(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

구분	결혼이민자	
	빈도(명)	비율(%)
전혀 그렇지 않다	0	0.00
별로 그렇지 않다	4	4.94
보통이다	22	27.16
대체로 그렇다	38	46.91
매우 그렇다	17	20.99
계	81	100.0

### 4. 지역주민과의 관계 개선

- 결혼이민자에 대한 정책이 지역주민과의 관계 개선에 어느 정도 기여를 했느냐는 질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하고 있음
  - ‘대체로 그렇다’(34.57%), ‘매우 그렇다’(13.58%) 등 긍정적인 응답이 48.15%임
  - ‘보통이다’에 답한 응답자가 38.27%, ‘전혀 그렇지 않다’(2.47%), ‘별로 그렇지 않다’(11.11%) 등 부정적인 응답자가 13.58%임
- 대부분의 결혼이민자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 그들과 지역주민과의 관계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표 6〉 지역주민과의 관계개선

	결혼이민자	
	빈도(명)	비율(%)
전혀 그렇지 않다	2	2,47
별로 그렇지 않다	9	11,11
보통이다	31	38,27
대체로 그렇다	28	34,57
매우 그렇다	11	13,58
계	81	100,0

#### IV. 지방자치단체의 결혼이민자 지원정책 개선방안

첫째, 결혼이민자사업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분담의 명확화임

- 현재 대부분의 결혼이민자 지원정책이 중앙정부에서 대부분 결정되는데 그 과정에서 각 지역의 특성이 반영되지 못하고 획일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고 일부 정책의 경우에는 비효율적인 서비스 전달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음
- 따라서 중앙정부는 정책의 큰 계획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각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조정해야 할 것이며, 이럴 경우 결혼이민자 지원서비스의 중복으로 인한 예산 낭비를 줄일 수 있고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
  - 예를 들어, 결혼이민자 한글교육 사업, 자녀정체성교육, 국적취득 등의 주요정책은 중앙정부가 결정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들과의 직접적인 접촉이 필요한 행정서비스 업무를 주도적으로 담당한다면 지역에서 결혼이민자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 것임

## 지방자치단체의 결혼이민자정책 개선방안 - 사례지역을 중심으로 -

둘째, 수요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생활정착 지원의 강화임

- 결혼이민자의 국적·체류기간·성별 등을 고려한 다양하고 차별화된 정책과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함
  - 결혼이민자의 안정적 생활정착 지원을 위해 한국어 교육, 취업·직업 훈련, 상담 및 피해구제 등 포괄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단순·수혜성 지원보다 결혼이민자의 자립능력 향상에 역점을 두는 정책을 시행하며 가족생애주기별 지원정책을 통해 수혜의 대상 범위에서 빠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결혼이민자가 없도록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도록 함

셋째, 접근성 확보를 위해 읍·면·동사무소 및 주민자치센터를 통한 결혼이민자 지원기능 강화가 필요함

-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이 시·군단위에 1~2개밖에 설치되어 있지 않음
-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읍·면·동 단위의 주민자치센터에 다문화사회 지원기능을 부여하여 이들을 지원하도록 함
  - 특히 결혼이민자의 지원을 위해 읍·면·동사무소에 외국인 지원담당 공무원을 배치하고 이들이 결혼이민자업무를 함께 수행하도록 함
  - 읍·면·동사무소의 결혼이민자 및 외국인지원담당의 배치는 지역 내 거주하는 외국인 및 결혼이민자 수에 따라 기초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며 지역 내에 결혼이민자 및 외국인의 거주자가 없는 경우 배치할 필요가 없음
  - 주민자치센터는 상담기능을 하되, 전문가가 상주하여 상담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별로 1주일에 1회 또는 2회 정도 요일을 정해놓고 순회상담을 하도록 함

넷째, 새마을부녀회 등 주변 시민사회단체를 통한 결혼이민자 지원임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접근성 부족으로 인한 불편을 해결하기 위하여 읍·면·동 단위 또는 더 작게는 마을 단위로 조직되어 있는 새마을부녀회 등 새마을조직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음
  - 우선 새마을조직은 읍·면·동 단위로 조직이 있으며 각 마을단위로 조직되어 있으며, 210만 여 명의 전국 회원과 18만여 명의 새마을지도자가 있음
  - 특히 새마을부녀회는 시·군·구부녀회, 읍·면·동부녀회, 마을 단위 부녀회로 연계되어 있어 부녀회원의 교육훈련을 통해 역량을 강화한 후 멘토로 활용하도록 하며, 이들의 장점은

근거리에서 멘토가 가능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지속적인 멘토가 가능하다는 것임

다섯째, 민관파트너십의 강화 및 역할분담임

- 결혼이민자 사회통합정책이 체계적으로 지속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시민사회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하며, 정부의 기획과 예산지원, 시민사회의 경험과 인력 지원이 결합되어, 정부-민간 파트너십을 적절히 구축하는 게 바람직함
  - 그동안 시민사회단체·종교단체가 운영해 온 이민자가족 지원서비스와 노하우를 소중한 자원으로 인정하고 협력 방안을 마련하도록 함
  - 양측 간의 신뢰 속에서 시민사회단체·종교단체가 그동안 축적해 놓는 경험과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실정에 맞는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시책의 수립 등 민관협력의 장점을 살린다면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지역 내 이민자 지원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추진주체 간의 합리적 역할분담이 필요함

여섯째, 유사중복사업의 조정 및 결혼이민자정책의 매뉴얼화임

-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 중인 결혼이민자정책과 자치단체 내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진 중인 정책이 유사하여 결혼이민자도 불편하고 양 기관 간에 경쟁시스템으로 운영되다 보니 행정의 비효율과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는 경우가 있음
  - 예를 들어 유사한 결혼이민자정책을 지역 내 종교단체에서 오래 전에 추진해 왔는데 후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사한 정책을 지역 내 관련 NGO에 민간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가 있음
  - 결혼이민자를 위해 도와줄 수 있는 정책의 유형과 수가 한계가 있으므로 유사한 정책이 중복 운영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지역 내 유사한 결혼이민자정책은 조정하여 통합하도록 함
- 한편 교육프로그램, 고용·복지 지원, 의료 서비스, 민원제도 등 지방자치단체의 결혼이민자 지원 관련 모든 정책을 모아 매뉴얼화하여 담당공무원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통해 결혼이민자에 대한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도록 함

일곱째,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강화임

- 결혼이민자 중에는 일부 고학력자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 인적 자원을 개발·활용함으로써

## 지방자치단체의 결혼이민자정책 개선방안 - 사례지역을 중심으로 -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고,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도록 함

- 이들에 대한 교육은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농업기술센터, 민간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하며, 주요 교육내용은 다문화강사, 이·미용, 정보처리, 번역, 제과제빵, 음식점, 영농교육 등의 국가자격증 취득 가능 과정 위주로 편성하도록 함

○ 결혼이민자를 위한 교육훈련 및 취업지원은 지역, 결혼이민자 유형, 거주여건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함

여덟째, 결혼이민자의 지역사회 참여 확대임

○ 결혼이민자들이 지역모임 및 지역사회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유도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서 도시지역에서는 반사회, 시민사회단체 모임, 아파트 주부모임, 주민자치회, 학교학부모 등의 모임에, 농촌지역에서는 농사일, 지역축제, 운동회, 동네행사 등의 모임에 적극 참여토록 권유함

- 이와 같은 장을 통해 지역주민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자연스러운 교류와 대화를 통해 서로의 입장과 문화를 이해하도록 하고 특히 결혼이민자의 한국어 습득에 도움이 되도록 함

○ 또한 지역사회로의 화합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지역사회의 이웃주민과 결혼이민자 간의 어우러질 수 있는 구체적인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함

- 대규모의 지역문화축제보다는 지역이 오랜 기간 동안 고수하고 진행시켜 오고 있는 작은 규모의 문화축제 및 민속행사 등에 결혼이민자들을 포함시켜 문화축제의 일원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함

○ 지역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지자체의 위원회 위원 위촉, 지방공무원 채용, 통리반장 위촉 등을 통해 지방행정의 의사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기회를 부여함

○ 또한 결혼이민자의 지역단위 새마을부녀회, 자원봉사 단체 등의 봉사활동에 참여시켜 결혼이민자의 자원봉사 활성화를 유도함

아홉째, 다문화사회에 대한 인식전환과 공감분위기 확산임

- 최근 많은 지방자치단체 및 시민사회단체에서 결혼이민자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아무리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주민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행정서비스를 강화하며 시민사회단체가 헌신적인 봉사를 통하여 결혼이민자의 사회생활에 도움을 준다 하더라도 지역 주민이 이들을 이웃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큰 의미가 없음
- 따라서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지역의 이웃 주민이 결혼이민자들에게 한국 문화 및 지역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도와주는 것이 필요함
- 한편 우리 사회 내부에는 결혼이민자에 대한 편견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대다수의 결혼이민자가 마음의 상처를 받은 경험이 있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주민들의 이들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이해하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함

## 참고문헌

- 김혜순(2008), '결혼이주여성과의 한국의 다문화사회 실험' 「한국사회학」 제42집 2호, 2008.
- 류정아(2009), '다문화지표개발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9.
- 지방행정연수원.(2011), '정부 다문화 정책의 기본방향', 지방행정연수원의 다문화사회 이해 교재, 2011.
- 최무현(2011), '다문화사회정책 거버넌스 현황과 미래지향적 발전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1.
- 최현미(2008), '결혼이민자들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과제', 「바람직한 다문화가정 정책모색을 위한 워크숍」 p.8, 안전행정부, 2008.
- 최홍(2010), '다문화사회 정착과 이민정책', 삼성경제연구원, 2010.
- 음성신문, 2014년 7월 1일자 보도내용  
<http://www.mospa.go.kr>  
<http://www.gte.or.kr>  
<http://www.es21.go.kr>

# 2013

- 통권 469 지방 3.0 실현을 위한 추진체계와 전략 연구
- 통권 470 정부간 인사교류의 활성화 방안
- 통권 471 지방의회 의정활동 역량강화 방안
- 통권 472 지방자치단체 외부 인적자원 활용 방안
- 통권 473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운영 자율성 강화 방안
- 통권 474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시민과 정부의 역할
- 통권 475 새마을운동을 통한 마을공동체 활성화 방안
- 통권 476 읍면동의 근린자치기능 강화방안
- 통권 477 중앙-지방 간 협력체계 강화방안
- 통권 478 지방자치단체의 유비쿼터스형 주민안전망 구축방안
- 통권 479 지방자치단체의 산림재해 주민안전망 구축 방안
- 통권 480 지방자치단체의 생활안전(4대약) 역할 및 대응시스템 구축방안
- 통권 481 지방재정관리체계 개선방안-자치단체 재정분석 및 재정공시제도 중심으로-
- 통권 482 지방세 비과세 · 감면제도의 개선방안
- 통권 483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 강화 방안
- 통권 484 보통교부세 재정형평화기능 강화방안
- 통권 485 사회복지 국고보조금의 개선방안 : 차등보조율을 중심으로
- 통권 486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개선방안
- 통권 487 외국인 밀집지역의 지역 공동체 활성화 방안
- 통권 488 지방분권형 특화산업 육성방안
- 통권 489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불균형 해소방안
- 통권 490 생활안전형 보행환경정책 개선방안
- 통권 491 지역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육성방안

# 2012

- 통권 458 지방자치단체 조직운영시스템의 다양화 방안
- 통권 459 지방자치단체 외부인재풀의 구성과 활용 방안
- 통권 460 다문화사회 정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이주민정책 개선방안
- 통권 461 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제도의 다양화 방안
- 통권 462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자본 측정 및 증진방안
- 통권 463 중앙-지방간 사회복지 재정부담 조정방안
- 통권 464 지방투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지방투융자심사제도 발전방안
- 통권 465 고령화·저성장시대의 지역발전 투자전략
- 통권 466 지역쇠퇴분석 및 재생방안
- 통권 467 지역공동체 주도의 발전전략 연구
- 연구총서 (통권 468) 새로운 지방예산제도

# 2011

- 통권 451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적 거버넌스 재설계 방안
- 통권 452 지방자치단체의 서비스공급 다원화 전략
- 통권 453 지방자치단체의 관리역량 강화 전략
- 통권 454 지방자치 선진화를 위한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 방안
- 통권 455 창조적 지역발전 전략
- 통권 456 지역주도의 일자리 창출전략
- 연구총서 (통권 457) 지방세제의 선진화 - 자율성과 책임성 제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30길 12-6(서초동) TEL. 02-3488-7399 FAX. 02-3488-7309